

서울고등법원 2022. 9. 22 선고 2021나2034009 판결 [공사대금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지섭, 조영운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장리 담당변호사 박형명, 설경

변 론 종 결 2022. 8. 18.

판 결 선 고 2022. 9. 22.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12. 선고 2020가합551962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42,47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부터 2021. 8. 12.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35,200,000원 및 위 돈 중 567,6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5. 1.부터, 283,8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6. 1.부터, 283,8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0.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86,338,500원 및 그중 293,169,250원에 대하여는 2018. 5. 1.부터, 146,584,625원에 대하여는 2018. 6. 1.부터, 146,584,625원에 대하여는 2018. 10.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4. 결론’ 부분 제외)는 제2항에서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3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6면 제5행부터 9행까지의 “원고는 피고에게 … 남지 않게 된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는 피고에게 지체상금으로 37억 4,616만 원(= 계약금액 14억 1,900만 원 지체상금율 3% 2018. 5. 14.부터 2018. 8. 10.까지 88일)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위 지체상금채권 37억 4,616만 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하도급채권 11억 3,520만 원과 상계하는바, 상계 결과 원고의 이 사건 하도급대금채권은 남지 않게 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6행부터 제9면 제1행까지 부분[3. 나. 2)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피고가 F에게 지급한 직불대금의 공제(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원고의 하도급업체인 F에게 재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피고가 2018. 5.경 원고를 대신하여 F의 직원들에게 그 급여를 직접 송금하는 방식으로 1억 8,983만 원을 직불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F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하도급대금을 피고가 대신 지급한 것이므로, 위 직불대금 1억 8,983만 원은 이 사건 하도급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을 제9호증의 1 내지 3, 20, 25, 2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F 사이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직불합의가 있었다거나 위 법률이 정한 하도급대금 직불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본래 원고가 F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재하도급대금 상당액을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지급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기재 내용을 부정할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 갑 제2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F의 직원들에게 1억 8,983만 원을 송금하기 전날인 2018. 5. 23. F과 사이에 ‘피고가 F에게 1억 8,983만 원을 변제기 2018. 8. 30.로 정하여 대여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가 F의 직원들에게 송금한 1억 8,983만 원은 원고가 F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하도급대금을 대신 지급한 것이 아니라, F으로부터 반환받을 것을 전제로 대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 피고는 위 1억 8,983만 원이 원고의 F에 대한 재하도급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할 뿐이고, 그러한 주장과 양립하기 어려운 위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의 작성 경위나 효력에 대하여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3) 피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F이 피고로부터 재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F 대표이사의 확인서(을 제25호증)를 제출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확인서는 성명을 비롯한 그 내용 전부가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F 대표이사 M의 서명만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을 뿐인 점, 위 확인서에 의하더라도 직불합의의 구체적 일시나 방법은 알 수 없는 점, 무엇보다도 앞서 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의 직불로 볼 수 없다는 제1심판결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피고와 마찬가지로 위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의 작성 경위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위 확인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경위(피고가 F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채택하여 F에 사실조회를 하였으나, F은 이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 법원이 2022. 4. 28. 사실조회회신 독촉서를 발송하였으나 위 독촉서는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였던바 그와 같은 상황에서 위 확인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등을 종합하면, 위 확인서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피고는 설령 직불합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F에게 재하도급대금 상당액을 지급하였고, 이로써 원고는 재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면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사무관리에 기한 비용상환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피고가 직접 지급한 인건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사무관리에 기한 비용상환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하도급대금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F에게 해당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보일 뿐 원고를 대신하여 재하도급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의 위 공제 항변 또한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16면 제4행(표 제외)의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다음에 “이 법원의 D병원에 대한 2022. 4. 2. 및 2022. 4. 27.자 사실조회회신결과”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21면 제1행 “확인된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D병원은 위 병원에 설치된 4가지 냉동기들 중 ‘빙축열 냉동기 및 축열조’가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하도급공사가 납기요청일까지 완공되지 아니하여 2018. 4.경부터 2018.

8.경까지는 비상용 전기식 터보 냉동기 1대를 함께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회신하였다.』

○ 제1심판결 제22면 제14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⑬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는 부품 설치뿐만 아니라 피고의 담당 공사 이행 후 시운전하는 등의 절차까지 이루어져야 하는바, 납기요청일은 현장 입고 및 설치가 완료되는 시점에 불과하고 피고의 담당 공사 이행 후 시운전 공종까지 진행되어야 이 사건 하도급공사가 완료되므로 납기요청일을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종기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의 “납기요청일”란에는 ‘흡수식냉동기 및 빙축열 설비교체공사를 2018. 4. 15.까지 각 완료하겠다’는 취지가 기재된 점(특히 그중 날짜 부분은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가 2018. 1. 12. C에게 제출한 이 사건 원도급공사 설명자료에 첨부된 예정공정표에도 2018. 4. 10.경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시운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원도급공사의 범위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 이외에도 D병원 본관과 별관, 복지관 내의 터보냉동기를 교체하는 공사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피고로서는 2018. 4.경까지 원고가 수행한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조기에 완료시키고, 자신이 담당하는 공사 부분을 추가적으로 수행할 의사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한 앞서 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담당 공사 이행 및 시운전 공종까지 고려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상의 “납기요청일”을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판결 제22면 제15행부터 제24면 제10행까지 부분[3. 나. 4) (2)]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지체상금채권의 범위

(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최종적으로 정해진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종기는 2018. 5. 13.인데, 원고는 2018. 8. 10. 비로소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완공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지체상금 37억 4,616만 원(= 계약금액 14억 1,900만 원 지체상금율 3% 2018. 10. 1.부터 2018. 8. 9.까지 88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설계도면 미제공 및 구조변경 요청(지연기간 18일), 브라인 물량 증가 및 보관장소 변경(지연기간 25일), 축열조 철거시 절단공법 변경 및 철거방법 변경(지연기간 68일)으로 인하여 이 사건 하도급공사가 합계 111일(= 18일 + 25일 + 68일) 동안 지연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지연이 아니므로 지체상금 산정 시 지체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수급인인 원고는 스스로의 면책을 위하여 자신에게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여야 하는바, 갑 제21, 22, 24, 25, 26, 3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1, 22호증, 을 제2호증의 2,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 사유들은 납기요청일을 연기하면서 모두 고려되었거나 원고가 추가로 문제삼지 않기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이 점에서 원고의 위 주장 사유들을 전제로 한 공사의 지연사유와 지연일수는 이를 감정을 통하여 확인할 필요가 없다).

① 원고의 위 주장 사유들 중 ‘피고의 설계도면 미제공 및 구조변경 요청’과 ‘축열조 철거시 절단공법 변경 및 철거방법 변경’은 관련 요청이나 논의가 2018. 2.경 이미 이루어졌고, ‘브라인 물량 증가 및 보관장소 변경’은 2018. 3. 8. 회의시에 문제 제기가 있었다.

② 원고는 2018. 4. 10.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그 취지는 위 공문 발송 당시까지 발생하였던 여러 지연 사유들을 모두 감안하여 납기요청일의 연장을 요청하는 것이었다. 피고는 이에 따라 당초 “2018. 4. 15.”이었던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납기요청일”을 “2018. 4. 30.”로 연장하였다가, 다시 “2018. 5. 13.”로 연장하였다. 즉 공문에 기재된 브라인 추출량 증대로 인한 저장방법 이슈, 축열조 장비철거방법 결정지연 등은 납기요청일을 연장하게 된 지연 사유를 원고가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 역시 열거한 사유들만을 고려하여 납기요청일을 연장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제목 E 빙축열 계통 및 냉동기 교체공사 중 빙축열 교체공사 진행관련 건

발신 : 원고, 수신 : 피고

■ 내용

본 공사건으로 2018년 1월 15일부터 … 공정준수를 위해 노력하였지만, 브라인 추출량 증대로 인한 저장방법 이슈, 축열조 장비철거방법 결정지연, 작업현장 환경 개선지연 등 여러 사항으로 인한 복합적인 지연사유가 함께 발생되었습니다.

귀 현장 작업 상 주위의 도움 없는 공정지연은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나 당사는 아래의 일정에 대해 공사완료 할 수 있도록 관리자 추가 상주하여 상세한 일정관리로 빠른 시일 내 가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

[기존] #1 축열조 가동: 2018년 4월 15일 #2 축열조 가동: 2018년 4월 30일

[변경] #1 축열조 가동: 2018년 4월 28일 #2 축열조 가동: 2018년 5월 13일

③ 원고는, 피고가 빙축열 축열조의 구조 검토가 필요하니 공사를 중단하라고 지시하였고 원래의 납기요청일인 2018. 4. 15.이 경과한 2018. 4. 16.에 이르러서야 원고에게 구조검토결과를 송부하면서 위 검토결과에 따라 빙축열 설비교체공사를 수행하라고 지시하였던바, 이러한 사유는 위 납기요청일 연장 당시 반영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3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8. 4. 16.경에 이르러서야 원고에게 빙축열 축열조 구조변경과 관련된 검토서를 송부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발생하였던 여러 사유 등을 모두 감안하여 납기요청일이 2018. 5. 13.로 연장된 것이고, 축열조 구조 검토 부분은 2월경부터 이미 논의가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빙축열 축열조의 구조 검토로 인한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지연 역시 위 납기요청일 연장 사유에 반영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원고는 위 납기요청일의 연장 요청 이후에는 별도로 납기요청일의 연장을 요청하지 않았다.

(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2018. 5. 18.부터 2018. 6. 15.까지 F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와 관련 있는 추가 배관공사를 수행하도록 하여 F이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투입하던 인력을 일부 차출하여 위 별도 공사를 수행하게 하는 바람에 이 사건 하도급공사 기간이 약 10일 지연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지연이 아니므로 지체상금 산정 시 지체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7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투입된 인력을 일부 차출하여 별도 공사를 수행케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라) 마지막으로 원고는, 2018. 3. 23.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하도급공사 기간이 약 7일 지연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지연이 아니므로 지체상금 산정 시 지체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화재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은바, 위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25면 제4, 5행의 “555,538,500원(= 3,703,590,000원 × 15%)”을

“561,924,000원(= 3,746,160,000원 × 15%)”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5면 제6행의 “(4) 상계”를 “나) 상계”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5면 제16행부터 제19행까지의 “따라서 상계 결과, … 지연손해금만이 남게 된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따라서 상계 결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하도급대금채권은 542,476,000원(= 앞서 이 사건 화재 관련 배상비용 3,080만 원과의 상계 결과 남은 수동채권 1,104,400,000원 - 자동채권 561,92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상계적상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만이 남게 된다.』

○ 제1심판결 제25면 마지막 행부터 제26면 제3행까지 부분[‘5) 소결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42,47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상계적상일 다음 날인 2018. 10.

1.부터 피고가 위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8.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기는 하나, 이는 피고가 제1심에서 계산 착오 등으로 지체상금의 기간을 1일 누락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이를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상계항변을 확장한 데 따른 것이므로, 이와 같이 추가 상계되고 남은 금액 자체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추가판단

가. 피고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화재 발생 이후 발주자인 C으로부터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받아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피고 소속 직원들을 추가로 투입하여 화기의 관리 및 감시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추가로 투입한 인력에 따른 인건비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위

인건비 상당액 역시 이 사건 하도급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을 제21,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은 액수의 인건비를 지급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C으로부터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받아 그 주장과 같은 추가 인원이 이 사건 하도급공사 부분에 투입되어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해서 화기의 관리 및 감시를 담당한 사실 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그 주장 사유만으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그러한 추가 인원 투입에 따른 인건비 상당액을 당연히 구상할 수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마용주, 판사 임종효, 판사 주선아